

서울특별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87호
- 나.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5년 8월 24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8월 31일

2. 제안이유

- 「의료급여법」에서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에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과,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부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5. 검토의견

가. 개요

- 이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5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지급금1)”과 “부당이득금2)”을 추가하고, 2013.6.12. 개정된 「의료급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함

<의료급여법 관련 조항 개정 내용 비교>

2013.6.12. 의료급여법 개정 전	2013.6.12. 의료급여법 개정 후
<p>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2. (생략)</p> <p>3.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p> <p>4.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p> <p>5.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p> <p>6.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p> <p>③ (생략)</p> <p>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따른</p> <p>② ----- 각 호 -----.</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p> <p>4. 제23조에 따라 -----</p> <p>5. 제29조에 따라 -----</p> <p>6. 기금-----</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조례 제명 띄어쓰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1)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 대지급 기준: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보건복지부 201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2)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나. 조례 개정의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³⁾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5조의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규정에 맞추어 “대지급금”과 “부당이득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의료급여기금의 재원)으로 명시하였으며,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기존에 “대불금”으로 사용되었던 용어를 2013.6.12.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맞추어 “대지급금”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이외에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긍정적 의미가 있다 할 것임

3)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의 정비(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관련)

- 우선, 조례 제명을 단어별로 띄어쓰기 한 것은 시민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정비한 것과 개정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대지급금과 부당이득금을 명시토록 한 것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조례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2) 개정 조례안 중 부정확한 조문 수정 검토(안 제5조, 제6조 관련)

- 그러나 개정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조문이 그 의미가 부정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아 개정안의 조문을 명확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제5조의 경우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이라는 문구

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문구 중 “수급권자에 대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한다는 것은 해석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뜻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이 조항은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및 수정안 비교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u>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이 필요한 때에는</u> 별지 제1호 서식에 <u>의하여</u>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u>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u>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u>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u> 별지 제1호 서식에 <u>따라</u>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u>제출하여야 한다.</u>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u>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u> 별지 제1호 서식에 <u>따라</u>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u>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 제6조의 경우 문장을 반복하여 쓴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수정하여야 할 것임. 개정안의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라고 규정한 조문은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개정안 및 수정안 비교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 <u>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u>명하여야</u> <u>한다.</u></p>	<p>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u>각 호의</u>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u>반환할 것을 명하거나</u> <u>필요한 조치를 하여야</u> <u>한다.</u></p>	<p>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u>각 호의</u>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u>명하거나 필요한 조치</u> <u>를 하여야 한다.</u></p>